



독일의 도로교통법

정보신청기관 : 법무연수원

I. 머리말

한국에서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을 보완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또한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¹⁾; 이하 StVG라 칭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Straßenverkehrs-Ordnung; 이하 StVO라 칭함)과 도로교통 허용에 관한 시행령(Straßenverkehrs-Zulassungs-Ordnung; 이하 StVZO라 칭함)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을 보완하고 있다.

독일의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주목할 점은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이외에 도로교통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일 형법전(Stra-

fgesetzbuch; 이하 StGB라 칭함)에 별도의 구성요건(StGB 제315b조, 제315c조, 제316조, 제316a조)을 가지고 있고, 그 제재로서 독일 형법전의 기본적인 법률효과인 자유형과 벌금형이 부과됨과 동시에 운전금지(StGB 제44조), 운전면허의 취소(StGB 제69조), 운전면허의 재발급에 대한 제한(StGB 제69a조)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형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기본적인 형벌이외에 부가적으로 범죄행위에 이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도로교통법 이외에 형법전에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의 체계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교통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



1) 본법은 2003년 3월 5일 공포된 법률에 2008년 4월 8일 본법 제5조가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그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독일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리고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교통의 안전확보 방안

1. 무면허운전(Fahren ohne Fahrerlaubnis)

공공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해당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허가는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증명되어진다(StVG 제2조 제1항).

이러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독일 형법 제44조와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이 금지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StVG 제21조 제1항 1호)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운전을 명령하거나 허락한 자(StVG 제21조 제1항 2호)에게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제1항의 행위를 과실로 실행한 자(StVG 제21조 제2항 1호), 등록된 운전면허증이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서 보관 또는 압수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StVG 제21조 제2항 2호),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자동차운전을 고의 또는 과

실로 명령하거나 허락한 자동차소유자(StVG 제21조 제2항 3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까지의 일수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 제1항의 사례 또는 행위자가 범죄행위 이전 3년 동안에 제25조 제1항의 범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에 자동차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지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를 몰수할 수 있다(StVG 제21조 제3항).

2. 차량번호판의 부정사용(Kennzeichenmissbrauch)

공공도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와 그 부속물²⁾은 해당관청의 도로교통운행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허가는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적인 차량번호판의 교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StVG 제1조 제1항).

행위자가 위법한 의도를 가지고 공적인 차량번호판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부속물을 공적인 차량번호판의 외관을 나타내기 적합한 표지를 부착하거나(StVG 제22조 제1항 1호),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부속물에 자동차를 위하여 공적으로 교부되거나 허용된 차량번호판과는 다른 것을 부착하거나(StVG 제22조 제1항 2호), 자동차 또는



2) 여기에서의 부속물은 본 차량과 별도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승용차에 캠핑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로 부착하여 운전하거나 또는 말을 운송하기 위한 마구간용 차량을 부착하여 운전하는데, 이러한 캠핑용 시설물 또는 마구간용 차량이 여기에서 말하는 부속물이다.

자동차의 부속물에 부착된 차량번호판을 변경, 제거, 은폐 또는 기타 그러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부속물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StVG 제22조 제1항 3호)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해당 범죄행위가 다른 조항에서 더 중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중한 형벌에 따라서 처벌된다.

그리고 또한 제22조 제1항에 열거한 유형의 공적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알면서도 공공도로 또는 공공장소에서 그러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부속물을 사용한 자에게도 제1항의 형벌을 동일하게 부과한다(StVG 제22조 제2항).

3. 차량번호판의 부정한 생성, 판매 또는 교부

해당관청에 등재되지 않은 차량번호판을 생성, 판매 또는 교부하거나(StVG 제22a조 제1항 1호), 차량번호판을 공적으로 허용된 차량번호판으로서 사용, 유통 또는 그러한 사용 또는 유통을 가능하게 할 의도로 모조품을 제작한 경우 또는 진품이라는 외관을 나타낼 의도로 위조하거나(StVG 제22a조 제1항 3호), 모조 또는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판매, 유통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모조 또는 위조된 차량번호판이 제1항의 범죄행위와 관련되어지는 경우에는 독일 형법 제74a조³⁾에 따라서 몰수한다.

4. 허가받지 않은 자동차부품의 판매

자동차에 관한 연방기관(Kraftfahrt-Bundesamt)에 의하여 허용된 방법으로 생산해야만 하는 자동차의 부품은 공적인 등록 또는 허가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부품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한 자는 질서위반죄에 따라서 처벌한다(StVG 제23조 제1항). 이 경우에 질서위반금은 5천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고(StVG 제23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동차의 부품은 몰수할 수 있다(StVG 제23조 제3항).

5. 음주운전

호흡에 의한 알코올농도가 0.25 mg/l 또는 그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5프로밀리(Promille) 또는 그 이상, 또는 알코올성분이 인체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질서위반죄에 의하여 처벌한다(StVG 제24a조 제1항). 또한 향정신성 약품의 섭취후에 자동차를 운전



3) StGB 제74a조는 몰수에 대한 확장적 전제조건으로서 판결시에 물건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물건 또는 권리를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의 예비의 수단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거나(제1호), 몰수의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그 대상을 비난 받을만한 방식으로 획득한 경우(제2호)에 해당 조항에서 본 법률에 의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대상을 몰수한다.

하는 경우에도 질서위반죄에 따라서 처벌한다. 이러한 향정신성 약품은 혈중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검증되어야만 하며, 단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에 의하여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규정에 맞는 섭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StVG 제24a조 제2항). 과실에 의한 음주운전 또는 향정신성 약품의 섭취후의 운전 또한 제24a조 제1항과 제2항과 동일하게 질서위반행위로 취급되며(StVG 제24a조 제3항), 이 경우에 질서위반금은 1,500유로까지 부과된다(StVG 제24a조 제4항).

독일 도로교통법(StVG) 제24a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질서위반금이 확정되면, 또한 운전금지를 동시에 명령할 수 있다(StVG 제25조 제1항). 운전금지는 질서위반판결이 확정되면 유효하게 적용되며, 그 금지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은 해당기관이 보관한다(StVG 제25조 제2항).

Ⅲ.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의 별도의 도로사용에 관한 규정

1. 단체에 의한 도로사용

단체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로교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존재하는 교통법규와 명령을 준수해야만 한다. 특히 15명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를 결성하여 해당 교통법규를 준수해야만 한다. 단체는 도로위에서 두 무리로 나누어 통행하여야 하며, 아이들과 청소년이 그룹을 형성하여 도

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인도를 통한 도보로 이동하여야 한다(StVO 제27조 제1항). 단체, 장레행렬 그리고 예배행렬은 그들의 길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적절한 간격의 중간영역을 설정하여 이동하여야 한다(StVO 제27조 제2항). 다른 도로교통참가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단체는 결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자동차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개별적 자동차에 해당 단체의 소속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만 한다(StVO 제27조 제3항).

자전거를 통하여 이동하거나 또는 도보로 행진하는 단체의 측면경계는 단체의 전방은 흰색의 램프를 통하여 후방은 적색 또는 노란색의 램프를 통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만 한다. 하나의 단체가 소규모의 다수의 무리로 나누어 통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그 소규모의 다수의 무리를 구별하여 모두를 보호하여야만 한다(StVO 제27조 제4항). 단체를 인도하거나 지도하는 자는 단체에 통용되어지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StVO 제27조 제5항).

위에 언급된 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질서위반죄에 따른 질서위반금이 부과된다(StVO 제49조 제2항).

2. 과도한 도로사용

도로위에서 자동차경주는 금지된다(StVO 제29조 제1항).

통상의 통행방식을 넘어서서 도로를 사용하고 자 하는 집회는 허가가 필요하다. 참가자의 수 또는 참가자의 행태 또는 자동차의 운전행태로 인하여 교통을 위한 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자동차단체에 있어서의 자동차들은 항상 통상의 통행방식을 넘어서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⁴⁾ 집회의 주최자는 교통법규와 주어진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만 한다(StVO 제29조 제2항).

위에 언급된 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질서위반죄에 따른 질서위반금이 부과된다(StVO 제49조 제2항).

IV. 형법상의 도로교통에 관한 범죄

1.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태롭게 침해한 경우

도로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파손, 손괴 또는 제거(StGB 제315b조 제1항 1호), 도로위에 장애물을 설치(StGB 제315b조 제1항 2호)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침해를 실행(StGB 제315b조 제1항 3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상당한 가치의 타인의 물건을 위태롭게 하는 침해를 실행한 자 또한 동일한

형벌에 처한다.

제315b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StGB 제315b조 제3항), 그러한 범죄행위를 과실에 의해 실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StGB 제315b조 제4항). 그리고 제315b조 제1항의 범죄행위가 과실로 인한 행위이고 또한 그 위해의 결과 또한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StGB 제315b조 제5항).

제315b조 제1항의 범죄행위가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범죄를 은폐하거나, 범죄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또는 다수의 사람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15조 제3항과 연결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러한 중한 사례가 약간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StGB 제315b조 제3항).

2.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음주 또는 다른 향정신성 약품의 섭취(StGB 제315c조 제1항 1호 a), 정신 또는 신체의 결함으로 인하여(StGB 제315c조 제1항 1호 b)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운전을 한 자는 도로교통의



4) 예를 들어 독일의 만하임(Mannheim)시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만하임 시내의 도로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이러한 행사에 있어서 동 조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이다. 또한 전방의 차량주
의의무 위반(StGB 제315c조 제1항 2호 a), 추월
방식의 위반(StGB 제315c조 제1항 2호 b), 횡단
보도에서의 진행방법 위반(StGB 제315c조 제1
항 2호 c),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 교차로,
도로진입로 또는 철도횡단로에서의 과속진행
(StGB 제315c조 제1항 2호 d), 가시거리가 확보
되지 않은 장소에서 도로우측에의 정차의무위반
(StGB 제315c조 제1항 2호 e),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후진 또는 역주행과 그
시도(StGB 제315c조 제1항 2호 f), 안전거리 미
확보(StGB 제315c조 제1항 2호 g) 또한 도로교
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러
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형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상당한 가치의 타인의 물건을 위
태롭게 한 자 또한 동일한 형벌이 부과된다.

제315c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그 미수
범 또한 처벌하며(StGB 제315c조 제2항), 제
315c조 제1항의 범죄행위를 통한 위해가 과실
로 발생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가 과실로 인하
여 실행되고, 그 위해의 결과가 또한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StGB 제315c조 제3항).

3. 음주 및 향정신성 약품의 섭취후의 운전

형법상 도로교통과 관련된 구성요건과 관련되
어 음주 또는 기타 향정신성 약품의 섭취로 인하
여 안전하게 자동차의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운전한 자는 비록 제315c조에 규정된 행
위를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자
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StGB 제316조 제1
항), 그러한 행위를 과실로 인하여 실행한 자 또
한 동일하게 처벌한다(StGB 제316조 제2항).

4. 강도죄의 실행을 위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공격

강도, 준강도, 강도를 위한 협박의 실행을 위
하여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생명, 신체
또는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자
유형에 처하며(StGB 제316a조 제1항), 그 침해
의 결과로서 타인의 죽음을 야기한 경우에는 중
신형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행위자가 경솔함으로 인한 행위이면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StGB 제316a조 제3항).
그 중한 침해의 결과가 약간 감소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StGB 제
316a조 제2항).

5. 형법전에 규정된 도로교통위반과 관련된 부 가적 형벌

(1) 운전금지

행위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수단으로 하여 범
죄행위를 실행하거나 또는 자동차운전자의 의무
를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고 그로 인하여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원

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행위자에게 도로교통에 있어서 모든 종류 또는 특정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금지는 보통은 형법 제69조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315c조의 제1항, 1호 a), 제3항 또는 제316조에 따른 유죄선고가 판결되는 경우에 명령되어진다(StGB 제44조 제1항). 이러한 운전금지는 판결의 확정을 통하여 유효하게 되며, 그 운전금지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은 해당관청이 보관하며(StGB 제44조 제2항), 운전면허증이 해당관청에 의하여 보관되면, 금지기간은 보관된 날로부터 계산한다(StGB 제44조 제3항).

(2) 운전면허의 취소

자동차의 운전을 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실행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거나 또는 위법한 행위를 실행하였지만 책임무능력으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게 법원은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한다(StGB 제69조 제1항). 이러한 위법한 행위는 제315c조에 의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StGB 제69조 제2항 1호), 제316조의 음주운전(StGB 제69조 제2항 2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그리고 재물손괴가 발생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의 사고장소 이탈(StGB 제69조 제2항 3호), 명정상태에서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행위 실행(StGB 제69조 제2항 4호)은 행위자가 자동차 운전

부적당한 경우로 간주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된다(StGB 제69조 제3항).

(3) 운전면허 재발급에 대한 제한

법원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동시에 법원은 6개월에서 5년까지 운전면허의 재발급을 금지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운전면허의 발급에 대한 제한만을 명령할 수 있다(StGB 제69a조 제1항). 행위자가 행위 이전 3년 이내에 이미 이러한 제한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제한기간은 1년이며(StGB 제69a조 제3항), 범죄행위로 인한 운전면허의 일시적 취소의 경우에는 재발급의 제한 기간은 운전면허의 일시적 취소의 기간만큼 단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3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StGB 제69a조 제4항). 재발급의 제한에 대한 기간은 판결이 확정되면 시작되며, 일시적 취소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포함된다(StGB 제69a조 제5항). 운전면허의 보관 또는 압수는 제4항과 제5항의 의미에서의 운전면허의 일시적 취소로 간주된다(StGB 제69a조 제6항).

특정 종류의 자동차에 있어서 이러한 운전면허의 재발급에 대한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러한 종류의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서 위태롭지 않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정당화할만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은 운전면허의 재발급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StGB 제69a조 제2항), 또한 운전면허의 재발급에 대한 제한을 명령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자

동차운전을 금지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운전면허의 재발급에 대한 제한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의 재발급에 대한 제한의 취소의 경우에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취소하여야만 하며, 제3항에 의한 재발

급의 제한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취소할 수 있다(StGB 제69a조 제7항).

이 재 일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